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 10. 18 (화)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 나. 회부일자 : 2005. 10. 25(화)
- 다. 상정일자 : 2005. 10. 25(화) 제12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특위

2. 제 안 이 유

-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으로 1개 부서와 여유기구를 신설하고,
- 나. 일부 부서의 명칭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반영하려는 것임.

3. 주 요 골 자

- 가. 제명 띄어쓰기 권장에 따른 제명 개정
- 나. 주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부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9조)
 - 임업경영과 ⇒ 산림과 - 농업경영과 ⇒ 농정과 - 축산경영과 ⇒ 축산과
- 다.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 관련 사무”를 신설함.
(안 제3조)
- 라. 평창군위생환경사업소를 위생시설관리담당으로 환경복지과에 흡수
(안 제3조)
- 마. 여유기구인 『스포츠사업단』을 신설하고, “동계올림픽 추진과 스포츠 사업 관련사무”를 통합· 1개단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육성·발전시키는 전담기구를 설치함(안 제3조의 2)

4. 검 토 결 과

- 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여유기구의 설치운영) 및 같은 규정 제10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 재난안전관리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이 사무를 주관하는 "재난안전 관리과"를 신설하였고
 - "2014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추진"과 "일반적인 스포츠사업 관련 사무"를 통합하여 여유기구인 스포츠사업단을 신설하였으며
 - 부서 명칭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임업경영과를 산림과로, 농업 경영과를 농정과로, 축산경영과를 축산과로 변경하였고
 -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평창군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평창군위생환경사업소장"을 "위생시설관리담당"으로 하여 환경 복지과에 흡수시키는 것으로 조직을 정비한 것임.
- 나.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관련법규 발췌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 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3·16, 1994·12·20>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여유기구의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도 : 1개 실·국, 2개 과·담당관(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1개 실·국, 3개 과·담당관)
2. 시·군·구 : 1개 실·과·담당관(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개 실·과·담당관)]

제10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4] 와 같다.

[별표4]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실·국	실·과·담당관
시	“생략”		
군	웅진군, 울릉군		8개 이내
	증평군		9개 이내
	인구 3만 미만		9개 이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10개 이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16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광역시 관할구역안의 군)	3개 이내	16개 이내
구	“생략”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6
------	-----

제출년월일 : 2005. 10. .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으로 1개 부서와 여유기구를 신설하고,
- 일부 부서의 명칭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제명 띄어쓰기 권장에 따른 제명 개정
- 나. 주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부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9조)
 - 임업경영과⇒산림과 • 농업경영과⇒농정과 • 축산경영과⇒축산과
- 다.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 관련 사무”를 신설함.(안 제3조)
- 라. 평창군위생환경사업소를 위생시설관리담당으로 환경복지과에 흡수(안 제3조)
- 마. 여유기구인 『스포츠사업단』을 신설하고, “동계올림픽 추진과 스포츠사업 관련사무”를 통합·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육성·발전시키고자 함.(안 제3조의 2)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임업경영과”를 “산림과”로 하고, “지역도시과”를 “지역도시과 · 재난안전관리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혁신분권 관련 업무

제3조제2항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도서관 관련업무

라. 관광마케팅 관련 업무

제3조제2항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여성 및 아동, 청소년 관련 업무

바. 분뇨의 위생적 처리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3조제2항제7호중 “임업경영과”를 “산림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백두대간보호 관련 업무

제3조제2항제8호중 마목을 삭제하고, 바목을 마목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에 바목 내지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

사. 경관관리 관련 업무

아. 대규모 지역개발을 위한 특정프로젝트 관련 업무

제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난안전관리과

가. 지역단위 재난·재해 관련 업무

나. 방재(복구지원) 관련 업무

다. 민방위 관련 업무

라. 안전지도 관련 업무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여유기구)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스포츠 사업단을 둔다.

1.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업무

2. 국·내외 각종 스포츠행사에 관한 업무

3.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

제9조제1호중 “농업경영과”를 “농정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축산경 영과”를 “축산과”로 한다.

제4장(제11조 내지 제13조)을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임업경영과”를 “산림과”로 한다.

②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2호중 “자치행정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③평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문화관광과장”을 “스포츠사업단장”으로, “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체육업무담당”으로 한다.

④평창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⑤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임업경영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평창군보건의료원	평창읍 종부리 504	평창군일원
미탄보건지소	미탄면 창리 710-1	미탄면 일원
방림보건지소	방림면 방림리 1284-7	방림면 일원
대화보건지소	대화면 대화리 1171-1	대화면 일원
봉평보건지소	봉평면 창동리 366-7	봉평면 일원
용평보건지소	용평면 장평리 380	용평면 일원
진부보건지소	진부면 하진부리 166-11	진부면 일원
도암보건지소	도암면 횡계리 335	도암면 일원
고길보건진료소	평창읍 고길리 237-11	고길리, 노론리, 조동리, 이곡리, 지동리, 상리
다수보건진료소	평창읍 다수리 335-4	임하리, 뇌운리, 계장리, 하일리, 다수리, 원당리
마지보건진료소	평창읍 마지리 666-1	마리1.2리, 천동리, 도돈리, 응암리, 대상리, 대하리
계촌보건진료소	방림면 계촌리 1496-3	계촌1,2,3,4,5,6리, 운교1,2리
가평보건진료소	대화면 하안미리 415-4	하안미 3,4,5,6리
개수보건진료소	대화면 개수리 742-5	개수1,2리, 상안미 1,2리
신리보건진료소	대화면 신리 278-11	신1,2,3,4,5리
면온보건진료소	봉평면 면온리 809-2	면온1,2리, 진조리, 유포2리, 무이2리
등매보건진료소	봉평면 유포리 75-1	유포1,2,3리, 재산2리, 백옥포2리
속사보건진료소	용평면 속사리 459-19	속사1,2리, 노동리, 이목정1,2리
두일보건진료소	진부면 두일리 138-4	두일리, 척천리, 탑동리, 상진부2리
거문보건진료소	진부면 거문리 246-7	상월오개1,2리, 신기리, 거문리, 마평1리, 봉산리
수항보건진료소	진부면 수항리 268-3	마평2리, 회의리, 정전리, 막동리, 수항리
유천보건진료소	도암면 유천리 747-1	유천1,2,3리, 병내리, 간평1리
용산보건진료소	도암면 용산리 392-1	용산1,2리, 수하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u> 제3조(실·과의 설치) ①군의 행 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 감사실·민원봉사과·자치행정 과·재무과·문화관광과·환경 복지과· <u>임업경영과</u> · <u>건설과</u> · <u>지역도시과</u> 를 둔다. ②(생 략) 1. ~2.(생 략) 3. 자치행정과 가.~라.(생 략) <u>마. 민방위 관련 업무</u> 바.~사.(생 략) 4.(생 략) 5. 문화관광과 가.~나.(생 략) <u>다. 체육진흥 및 청소년 관련 업무</u> <u><신 설></u> 6. 환경복지과 가.~다.(생 략) <u>라. 여성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u> 마.(생 략)	<u>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u> 제3조(실·과의 설치) ①----- ----- ----- ----- ----- · <u>산림과</u> · <u>건설과</u> · <u>지역</u> <u>도시과</u> · <u>재난안전관리과</u> 를 둔다. ②(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가.~라.(현행과 같음) <u>마. 혁신분권 관련 업무</u> 바.~사.(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u>5.(현행과 같음)</u> 가.~나.(현행과 같음) <u>다. 도서관 관련 업무</u> <u>라. 관광마케팅 관련 업무</u> 6.(현행과 같음) 가.~다.(현행과 같음) <u>라. 여성 및 아동, 청소년 관련 업무</u> 마.(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바. 분뇨의 위생적 처리 및 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u>
<u>7. 임업경영과</u> 가.~다.(생 략)	<u>7. 산림과</u> 가.~다.(현행과 같음)
<u><신 설></u>	<u>라. 백두대간보호 관련 업무</u>
<u>8. 건설과</u> 가.~라.(생 략) 마. 지역단위 재난·재해관련 업무 바.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u>8. (현행과 같음)</u> 가.~라.(현행과 같음) <u><삭 제></u> <u>마.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u>
<u>9. 지역도시과</u> 가.~마.(생 략)	<u>9.(현행과 같음)</u> 가.~마.(현행과 같음)
<u><신 설></u>	<u>바.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u>
<u><신 설></u>	<u>사. 경관관리 관련 업무</u>
<u><신 설></u>	<u>아. 대규모 지역개발을 위한 특정 프로젝트 관련 업무</u>
<u><신 설></u>	<u>10. 재난안전관리과</u> <u>가. 지역단위 재난·재해 관련 업무</u> <u>나. 방재(복구지원) 관련 업무</u> <u>다. 민방위 관련 업무</u> <u>라. 안전지도 관련 업무</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3조의1(여유기구) 다음 사무 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 로 스포츠사업단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업무 2. 국·내외 각종 스포츠행사에 관한 업무 3.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9조(소관사무) ----- -----.
<u>1. 농업경영과</u> 가.~마.(생 략) <u>2. 축산경영과</u> 가.~라.(생 략)	<u>1. 농정과</u> 가.~마.(현행과 같음) <u>2. 축산과</u> 가.~라.(현행과 같음)
<u>제4장 사업소</u>	<삭 제>
<u>제11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u> <u>정에 의하여 군민의 보건위생</u> <u>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u> <u>를 위하여 군에 위생환경사업소</u> <u>(이하“사업”라 한다)를 설치한</u> <u>다.</u> <u>②사업소의 위치는 평창군 평창</u> <u>읍 노론리 125-3번지에 둔다.</u>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u>제1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u></p>	<p><삭 제></p>
<p><u>제13조(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의 위생처리 방법 연구발전 3. 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p><삭 제></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여유기구의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도 : 1개 실.국, 2개 과.담당관(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1개 실.국, 3개 과.담당관)
2. 시.군.구 : 1개 실.과.담당관(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개 실.과.담당관)]

제10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4]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실.국	실.과.담당관
시	“생략”		
군	옹진군, 울릉군		8개 이내
	증평군		9개 이내
	인구 3만 미만		9개 이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10개 이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16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광역시 관할구역안의 군)	3개 이내	16개 이내
구	“생략”		

입법예고 관계 법령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창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4조(예고의 예외) 입법예고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정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정비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인 경우
4. 예고함으로써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